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819

2019년 8월 29일 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8월 6일, 김광수 의원 외 11명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3일

다. 상정일자: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
(2019년 8월 29일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김광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 및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시장이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

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(안 제4조의5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(수석전문위원 : 이 재 효)

- 동 조례안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.
- 현재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은 도시금속회수센터(SR센터),
 새활용플라자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고, 홍보는 다양한 홍보매체나 시민체험
 마당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바(참고자료 참조).

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안 제4조의5와 같이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또한, 「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」제4조에서도 시장의 책무로 자치구, 사업자, 시민,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동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음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없 음
- 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5(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)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재 정 안 제4조의5(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)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있다.